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49

발의연월일: 2020. 8. 31.

발 의 자:정청래·송재호·이형석

남인순 · 윤재갑 · 정일영

윤미향 · 김남국 · 김민철

아줌(비) · 서동용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가짜나무·가짜돌 등으로 꾸민 실내동물원·동물카페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동물들의 최소한의 서식환경, 복지가 전혀 보장되지 않아 비정상적이고 무기력한 정형행동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원·수족관에 대해 지자체 등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법의 목적에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항이 없어 이를 제재하거나 금지할 근거가 없음.

이에, 동물의 복지수준에 미달되는 시설은 운영하지 못하도록 허가 제를 도입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함.

또한, 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동물 복지를 위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선진

적인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개선·발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4 등).

법률 제 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록과"를 "허가와"로, "등을 보전·연구하고"를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를 보전·연구하며"로, "제공하며"를 "제공하고"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등록 등)"을 "(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 다"를 "갖추어야 한다"로 한다.

-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동물원에 한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수족관에 한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보유 생물, 사람의 안전을 위한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 2. 보유 생물의 적정한 서식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설비 및 관리체

계를 갖출 것

3.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 설비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허가증
- 2.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허가, 변경허가의 방법 및 절차, 허가 요건 등 필요한 사항과 허가에 활용할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 영·관리에 관한 지침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

- 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다시받아야 한다.
- 제3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자가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 및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제3조의4(검사관)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관 (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4조의2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검사관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야생동 물 보전·사육·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전·사육·연구 등의 업무수 행 경력이 있는 자
- 3.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 상 수의업무 경험이 있는 자
- 4.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관리와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환경부·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자
- ③ 검사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시설·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이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그 밖에 검사관의 임명 또는 위촉 절차,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 제목 "(등록의 취소)"를 "(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등록을"을 각각 "허가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이"를 "허가가"로, "등록증을"을 "허가증을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에게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휴 원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 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환경부장관, 해양수산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환경부장관, 해양수산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 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 또는 검사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사항"을 "허가사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등록을"을 "허가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검사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원과 수족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된 동물원과 수족관으로 본다. 이 경우 제3조제2항, 제3조의2 및 제3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원 및 제1조(목적)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 -----허가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 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 • 연구하고 그 생태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를 보 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연구하며-----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 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공하고----하다. 제3조(등록 등) <신 설> 제3조(허가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동 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 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환 경부장관(동물원에 한한다)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수족관에 한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 다. 1. 보유 생물, 사람의 안전을 위한 시설・설비 및 관리체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 하려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 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 다. ------호 및 제5호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 어 등록하여야 한다.

- 1. ~ 8. (생략)
- ②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제1 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 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ㅣ 는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에 따른 사항 이외의 사항이

계를 갖출 것

- 2. 보유 생물의 적정한 서식환 경 유지를 위한 시설・설비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 3.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 공통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설비 및 관리체 계를 갖출 것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운영·관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갖추어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 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변경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 | ④ 제1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록 및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 수족관의 운영 허가를 받은 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변경허가 를 받아야 한다.

- 1. 허가증
- 2.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계 획서(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하다)
-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 지의 허가, 변경허가의 방법 및 절차, 허가 요건 등 필요한 사항과 허가에 활용할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 한 지침서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의2(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 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

<신 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자가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아니한 자</u>
- 3. 이 법 및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 다)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아닌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제3조의4(검사관)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

<신 설>

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 2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

②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및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검사관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야생동물 보전·사육·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u>자</u>
-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

 년 이상 보전·사육·연구

 등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u>자</u>

- 3.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 사로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에서 7년 이상 수의업무 경 험이 있는 자
- 4.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 관 운영・관리와 정책에 관 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환경부・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자
- ③ 검사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 의 허가, 관리 등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기간을 정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시설・설비 등을 검 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 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 부・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그 밖에 검사관의 임명 또 는 위촉 절차,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해양수 산부의 공동부렁으로 정한다.

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

제4조(등록의 취소) ① 시·도지 제4조(허가의 취소) ① 환경부장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u>등록을</u>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u>등록을</u> 취소하여 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u>등록이</u> 취소 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 내에 <u>등록증을</u> 시·도지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 ① (생 략)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속해서 6개월 이상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보유 생물관리계획, 향후 연간 개방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한다.

<u>허가를</u>
<u>허가를</u>
1
<u>허가를 받은</u> 2. <u>제3조제1항·제2항에 따른</u>
허가요건
3. (현행과 같음)②<u>허가가</u>
<u>허가증을 환경부장관, 해</u> 양수산부장관 또는
 레드코/도마이 미 스즈코이 케버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

-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폐원신고를 한 자는 <u>시·도지사에게 제3조</u>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하 여야 한다.
- ⑤ (생 략) <신 설>

제8조(안전관리)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
③
환경부장관, 해양수산
<u>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
·.
4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
<u>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3</u>
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u>.</u>
⑤ (현행과 같음)
⑥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휴원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
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
유)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 생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포획・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u>시・도지사</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의 제출)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 동물원 및 수족관의 연 간 개방 일수를 매년 1회 <u>시·</u>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u>시·도지사</u>는 제1항의 자료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u>시·</u>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u>환경</u> 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 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u>환경부장관,</u> 해양
제10조(자료의 제출) ①
치 거 ㅂ
<u>환경부</u>
<u>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u>
·도지사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
<u>관 또는 시·도지사</u>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u>환경</u>

을	운영하	나는 지	와 동	물원 5	또는
수	족관에/	서 근	무하는	자가	제7
조여	에서 경	성한 /	나항을	위반형	했는
기	여부	등을	점검	하여야	한
다.					

- ② 시·도지사는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u>공무원으로</u>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출입하 여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u>공무원</u>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2조(조치명령) ① 시·도지사 전 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u>시・도지사</u>	_
	_
	_
	_
	_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정	<u>}</u>
관 또는 시·도지사	_
	_
<u>공무원 또는 검사관</u>	_
	_
	_
3	_
	_
	_
	_
세12조(조치명령) ① <u>환경부장관</u>	- <u>,</u>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ズ	1
<u>사</u>	_
	_
	_
	_
	_

- 1.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
 1.

 경등록사항과 다르게 운영되
 --

 는 경우
 --
- 2. ~ 4. (생략)
- ② (생략)
- 제15조(청문) <u>시·도지사</u>는 제4 조제1항에 따라 동물원·수족 관의 <u>등록을</u> 취소하는 경우에 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벌칙)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 경등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 성하여 제출한 자
 - 2.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
 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
 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 3. ~ 5. (생 략)
 - 6.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1 <u>허가사양</u>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청문) 환경부장관,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u>허가를</u>
제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1 <u>허가 또는 변경</u>
<u>허가</u>
2 <u>허가 또는 변경</u>
허가를 받지
3. ~ 5. (현행과 같음)
6
공무원 또는 검사관

-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생 략)
- 제18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시·도지사가 부과한다.

7. (현행과 같음)
제1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느 시·도지사